

울산지방법원 2017. 7. 11 선고 2016가단1655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1. C

2. D(개명 전: E)

변론 종결 2017. 6. 20.

판결 선고 2017. 7. 1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들에게,

1) 경남 양산시 F 전 407㎡ 중 별지3 도면표시 10,11,12,13,14,15,16,17,18,19,20,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부분 131㎡ 조적조 스텔트 판넬지붕 단층 주택과,

2) 같은 도면 표시 21,22,6,23,24,25,26,27,28,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부분 83㎡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을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4 각 '청구원인' 및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C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D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용두

별지